

# 2016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 I . 회부개요

1. 의안번호 : 제1445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16년 10월 31일
4. 회부일자 : 2016년 11월 3일

### II . 검토의견

#### 1. 개요

- 2016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이라 함)은 2조 2,136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1,815억 원에서 321억 원이 증액 편성(1.5%)됨.

<표 1.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명세>

(단위 : 천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656,216,476) 2,213,607,411	(×643,189,117) 2,181,526,213	(×13,027,359) 32,081,198	1.5%

- 금번 추경 편성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총지출 증가액(321억 원)은 서울시 전체 총지출 증가액에 대비하면 1.3%에 해당함.

<표 2. 서울시 및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총지출 현황>

(천원, %)

구 분	'16년도 추경안(A)	'16년도 기정예산(B)	증가율	증감 (A-B)
◇ 서울시총예산(a)	29,904,350,693	27,503,757,620	8.73	2,400,593,073
◇ 여성가족정책실(b)	2,213,607,411	2,181,526,213	1.5%	32,081,198
※ 비중(b/a)(%)	7.4%	7.9%	-	5.9%

## 2. 추경안 편성방향 및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

- 서울시는 금번 여성가족정책실의 추경안에 대한 편성방향에 대하여, “국비 증감 등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추경 및 연말 불용 예상 사업 감액추경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히고, 총 13건의 사업에 대하여 추경안을 편성함.
-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증액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보조)’사업 및 ‘어린이집 지원(보조)’사업,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에서 각각 263억 원, 108억 원, 96억 원이 증액되고,
  - 감액 사업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자녀교통비등 지원’사업에서 각각 96억 원과 63억 원이 감액됨.

### <표 3. 부서별·사업별 추경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회계·부서		세부사업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증감사유
1	여성정책 담당관	여성새로일하기센 터지정운영	(x9,245,532) 12,235,952	(x8,369,004) 11,359,608	(x876,528) 876,344	7.7%	○ 변경내시로인해국비증가(성립전 예산처리(5.30):국비971,150천원) ○ 가내시대비확정내시감액(국비 △94,622천원, 시비 △184천원)
2	여성정책 담당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x137,940) 275,880	(x46,295) 92,590	(x91,645) 183,290	198.0 %	보건복지부국비변경내시매칭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2317(2016.4.18)호)
3	여성정책 담당관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x1,554,712) 4,172,287	(x1,544,863) 4,152,588	(x9,849) 19,699	0.5%	여성가족부 국비 변경내시 매칭 (권익지원과-1198, 2016.4.27)
4	여성정책 담당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x348,000) 696,000	(x338,000) 676,000	(x10,000) 20,000	3.0%	여성가족부 국비 변경내시 매칭 (권익지원과-1198, 2016.4.27)
5	여성정책 담당관	여성장애인사회참 여확대지원	(x146,500) 293,000	(x145,704) 291,408	(x796) 1,592	0.5%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장애인서 비스과 - 7424, 2015. 12. 10)
6	여성정책 담당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x4,459,268) 6,904,524	(x3,990,868) 6,436,124	(x468,400) 468,400	7.3%	여 성 가 족 부 확 정 내 시 - 신규 해바라기센터 설치 운 영(권익정책과 - 1777, '16. 5. 31.) 성립전예산 처리(8.29) : 국 비 4 0 0 , 0 0 0 천 원 ) - 해바라기센터 운영(권익정책 과 - 62, 2016. 1. 8.) : 68,400 천원(성립전예산 처리 10.25)
소 계					(x1,457,218) 1,569,325		
7	보 육 담당관	영유아 보육료(보조)	(x330,121,447) 614,189,244	(x315,926,000) 587,848,804	(x14,195,447) 26,340,440	4.5%	국 고 변 경 내 시
8	보 육 담당관	어린이집 지원(보조)	(x19,064,823) 142,098,354	(x14,964,040) 131,299,626	(x4,100,783) 10,798,728	8.2%	국 고 변 경 내 시
9	보 육 담당관	시간제보육운영지 원(보조)	(x2,567,000) 3,850,499	(x3,142,942) 4,714,413	(x△575,942) △863,914	-18.3%	국 고 변 경 내 시
10	보 육 담당관	가정양육수당 지원	(x162,422,000) 301,383,044	(x167,614,000) 311,017,089	(x△5,192,000) △9,634,045	-3.1%	국 고 변 경 내 시
11	보 육 담당관	보육돌봄서비스	(x62,843,922) 201,814,329	(x64,392,069) 192,233,665	(x△1,548,147) 9,580,664	5.0%	국고추가교부액에대한매칭시비 및 국고미지원어린이집에대한인 건 비 시 비 확 보 필 요
소 계					(x10,980,141) 36,221,873		
12	가 족 담당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x957,437) 2,882,065	(x367,437) 2,292,065	(x590,000) 590,000	25.7%	여성가족부 확정(증액)내시 증 가 분 반 영
13	가 족 담당관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등 지원	8,763,654	15,063,654	△6,300,000	-41.8%	당초 계획인원(55,290명)에 비해 실지원인원(37,073명)이 감소하 여 감 추 경 필 요
소 계					(x590,000) △5,710,000		
총 계					(x13,027,359) 32,081,198		

### 3.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 내역

○ 부서별 추경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표 3),

-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은 총 6건의 사업에서 15억 6,932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사업을 비롯한 이들 6건 모두는 국비 증액에 따라 편성 된 것임.
- 보육담당관 소관 사업은 총 5건의 사업에서 362억 2,187만 원이 증액됨. 이들 5건의 사업도 국비 변경에 따른 시비매칭분 확보 또는 감액을 위한 것으로, 이 가운데 '영유아보육료(보조)' 사업을 비롯한 총 3건은 증액을, '시간제보육운영비지원(보조)' 사업을 비롯한 총 2건은 감액 사업임.
- 가족담당관 소관 사업은 총 2건의 사업에서 57억 1,000만원이 감액됨. 이 가운데 1건(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사업)은 국비변경에 따른 증액 추경이며, 나머지 1건(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등 지원)은 순수 시비사업으로, 지원 실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 추경을 위해 편성된 것임.

## 4. 추경안 편성사유별 사업내역

- 추경안의 주요 편성 사유는 크게 ①국비 내시 증액에 따른 매칭 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한 증액 편성과 ②국비 내시 감액에 따른 매칭 시비의 감액 조정 편성, 그리고 ③(동일 사업 내)국비 증액 및 시 추진사업에 대한 추가 증액 편성이 혼재된 사유와 ④ 불용이 예상되는 순수 시비사업에 대한 감액 편성을 위한 것으로 나눠볼 수 있고, 그 구체적 사업내역은 아래의 <표 4>와 같음.

<표4. 추경안 편성사유별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유별 구분	사업명	예산			담당 부서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국비 증액에 따른 증액	중액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x9,245,532) 12,235,952	(x8,369,004) 11,359,608	(x876,528) 876,344	여성정책 담당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x4,459,268) 6,904,524	(x3,990,868) 6,436,124	(x468,400) 468,400	여성정책 담당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x957,437) 2,882,065	(x367,437) 2,292,065	(x590,000) 590,000	가족 담당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x137,940) 275,880	(x46,295) 92,590	(x91,645) 183,290	여성정책 담당관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x1,554,712) 4,172,287	(x1,544,863) 4,152,588	(x9,849) 19,699	여성정책 담당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x348,000) 696,000	(x338,000) 676,000	(x10,000) 20,000	여성정책 담당관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x146,500) 293,000	(x145,704) 291,408	(x796) 1,592	여성정책 담당관
		영유아 보육료(보조)	(x330,121,447) 614,189,244	(x315,926,000) 587,848,804	(x14,195,447) 26,340,440	보육 담당관
		어린이집 지원(보조)	(x19,064,823) 142,098,354	(x14,964,040) 131,299,626	(x4,100,783) 10,798,728	보육 담당관
국비 변동감액에 따른 시비 매칭 감액	감액	시간제보육운영지원(보조)	(x2,567,000) 3,850,499	(x3,142,942) 4,714,413	(x△575,942) △863,914	보육 담당관
		가정양육수당 지원	(x162,422,000) 301,383,044	(x167,614,000) 311,017,089	(x△5,192,000) △9,634,045	보육 담당관
국비증액 반영 및 시비 추진사업에 대한 추가 증액	중액	보육돌봄서비스	(x62,843,922) 201,814,329	(x64,392,069) 192,233,665	(x△1,548,147) 9,580,664	보육 담당관
시비 감액	감액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등 지원	8,763,654	15,063,654	△6,300,000	가족 담당관

## 5. 사업별 검토의견

### 1)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 사업 및 추경 개요

○ 동 사업은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여성 대하여 취업교육, 법률·의료·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자립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임.

- 세부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과, 국·시비 매칭(5:5) 사업, 그리고 순수 시비지원 사업이 혼재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5와 같음.

<표 5. 세부사업별 재원부담 및 2016년 예산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재원부담 (국·시)	예산과목	2016예산 (당초예산)
전액 국비	비수급 성폭력피해자 생계급여 지원등	100: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6,876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통합형)	100: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785,000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아동형)	100: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510,800
	돌봄비용 지원	100:0	사회복지사업보조	18,253
국 시 비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위기지원형)	50:50	민간위탁금	624,200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12개소)	50:5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972,836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7개소)	50:5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01,900
	통합상담소 운영지원(1개소)	50:5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14,388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50:5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18,752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지원	50:50	사회복지사업보조	214,664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50:50	사회복지사업보조	633,838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50:50	민간자본보조	30,000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비	50:50	민간자본보조	9,300
순수 시비	종사자 수당	0:10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773,617
	동반자녀 교복지원(수급자)	0:100	사회복지사업보조	4,500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0:100	사회복지사업보조	7,200

○ ' 16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64억 3,612만원이고, 금번 추경안은 4억 6,840만원이 증액(4.5% 증가)된 69억 452만원이 편성됨.

○ 증액의 사유는, 우선 ①여성가족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성폭력피해 지원시설(가칭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1개소가 추가 설치되어, 이에 따른 설치비와 운영비에 대한 국비가 증액 내시 된 것임. 그리고 ②기존에 운영되던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1개소에 대하여는 운영비가 증액 내시(당초 15억 1,080만원에서 15억 7,920만원으로, 6,840만원 증액)되면서, 이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 하려는 것임

<표 6. ' 16년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추경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	산 출 내 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계	(x4,459,268) 6,904,524	(x3,990,868) 6,436,124	(x468,400) 468,400	7.3		
민간위탁금	(x312,100) 624,200	(x312,100) 624,200	(x0) 0	-	-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x3,340,314) 5,017,869	(x3,216,614) 4,894,169	(x123,700) 123,700	2.5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운영 변경내시(1,510,800 → 1,579,200) 68,400천원 증 ○가칭)국립중앙의료원 해바라 기센터 운영 55,300천원(성립 전예산 처리(8.29))	해바라기여성아동센 터 운영 (×1,510,800 천원)1,510,800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	(x442,504) 878,455	(x442,504) 878,455	(x0) 0	-	-	-
민간자본보조	(x364,350) 384,000	(x19,650) 39,300	(x344,700) 344,700	877.1	○가칭)국립중앙의료원 해바라 기센터 설치 344,700(10월중 성 립전예산 처리(10.25))	-

##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지방재정법」 제45조<sup>1)</sup>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므로, 상기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추경요건에 대한 정합성을 살펴볼 때, 동 사업의 추경내역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내시된 국비에 대하여 금번의 추경 안을 편성한 것인바, 법령에 따른 추경 요건 및 그 사유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 조항(및 제1호)에 따른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해당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sup>2)</sup>이 가능한 경비이며, 참고로 동 예산은 이의 근거를 토대로 지난 '16년 8월 29일과 10월 25일자로 두 차례에 걸쳐 기 집행되었음.

1)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2) 금번 제출된 추경 안 이 가운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새로 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일부사업)’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조항에 따른 전액국비 사업인 성립 전 예산임. 단, 새로일하기센터지정운영 사업의 경우, ‘직업훈련교육’을 위해 배부된 9억 7,100만 원에 대하여만 ‘성립전 예산’임



## 2) 영유아보육료(보조)

### ◆ 사업 및 추경 개요

- ‘영유아보육료(보조)’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고보조사업(보조율: 국비45%, 시비 38.5%, 구비 16.5%<sup>3)</sup>)임.
- 동 사업의 '16년도 기정예산액은 5,878억 4,880만 원이며, 추경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263억 4,044만 원을 증액(4.5% 증가)한 6,141억 8,924만 원이 편성됨.

〈표 7. '16년도 영유아보육료(보조) 사업 추경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	산 출 내 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계	(×330,121,447) 614,189,244	(×315,926,000) 587,848,804	(×14,195,447) 26,340,440	4.5	-	-
자 경 보 조 금	(×330,121,447) 614,189,244	(×315,926,000) 587,848,804	(×14,195,447) 26,340,440	4.5	• 0-2세 보육료 : 612,558,684천원 • 방과후 보육료 : 1,630,560천원	• 0-2세 보육료 : 586,218,244천원 • 방과후 보육료 : 1,630,560천원

###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추경안의 편성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3) 단, 방과후 보육료의 경우는 교부금 매칭으로 교육청 30%, 시비49%, 구비 21%의 매칭됨

①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 ② 예비비 사용·세출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 극복이 곤란한 보충성 ③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금번에 추경 편성된 ‘영유아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sup>4)</sup>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동 비용은 2016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추경사유의 시급성이 인정됨.

○ 또한, 금번 추경의 사유는 ‘16년 3월과 맞춤형 보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7월에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단가가 인상됨<sup>5)</sup>에 따라, 이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가 증액된 것임. 이에 금번 추경안은 여기에 대응하는 시비 매칭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추경에서 이의 예산이

---

4)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영유아보육료 단가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16년 보육료 예산편성 당시에는 `16년 3월부터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며 보육료 단가는 `15년 대비 6%를 인상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맞춤형 보육은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 제도변경 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필요함에 따라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작되었음.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기 전인 3월부터 전체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15년 대비 3% 인상하여 지급함. 이후, 맞춤형 보육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맞춤형의 기본보육료를 종일반의 기본보육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16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맞춤형의 기본보육료 또한 종일반의 80%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보육료 지원 단가가 상승하게 됨.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사업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금번 추경 사유의 불가피성이 인정됨.

<표 8. '16년도 영유아보육료 단가 비교표>

(단위 : 천원)

구분	'15년 보육료 (3월~'16년 2월)		'16년 보육료 (3월~6월)		'16년 보육료 (7월~)			
	지원	미지원 (기본 보육료)	지원	미지원 (기본 보육료)	종일반		맞춤반	
					지원	미지원 (기본 보육료)	지원	미지원 (기본 보육료)
0세반	406	778 (372)	418	801 (383)	430	825 (395)	344	660 → 739 (316 → 395)
1세반	357	537 (180)	368	553 (185)	378	569 (191)	302	455 → 493 (153 → 191)
2세반	295	413 (118)	304	425 (121)	313	438 (125)	250	350 → 375 (100 → 125)

\* 출처 : 보건복지부

\* 괄호 안은 기본보육료를 나타낸 것임.

### 3) 가정양육수당 지원

#### ◆ 사업 및 추경 개요

-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가정 내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7조의2(양육수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국비보조사업 임(보조율: 국비45%, 시비 38.5%, 구비 16.5%).

6)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년도 동 사업의 당초예산은 3,110억 170만 원이며, 금번 추경안은 96억 3,404만 원을 감액(8.2% 감소)한 3,013억 8,304만 원을 편성 함.

〈표 9. '16년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추경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	산 출 내 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계	(×162,422,000) 301,383,044	(×167,614,000) 311,017,089	(×△5,192,000) △9,634,045	3.1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162,422,000) 301,383,044	(×167,614,000) 311,017,089	(×△5,192,000) △9,634,045	3.1	가정양육수당 대상인원 -월 188,620명	가정양육수당 대상인원 -월 214,320명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동 사업의 추경사유는, 당초 대상인원 대비 지원대상 실인원이 감소(당초 월 214,320명 => 188,620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국비 내시액이 감액(51억 9,200만원) 교부 됨으로써, 여기에 해당하는 국비와 시비 매칭분(44억 4,200만원) 총 96억 3,4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이는 가정양육을 필요로 하는 신청가정에 대한 실인원에게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동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금번의 추경 사유는 적절하며 그 불가피성이 인정됨.

## 4)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 ◆ 사업 및 추경 개요

-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서울시립 여성노숙인 시설(2곳)에 대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는 위한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와 시비를 5:5로 매칭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임.
- 동 사업의 '16년도 당초예산은 9,259만 원이고, 금번 추경안은 1억 8,329만 원이 증액(198% 증가)한 2억 7,588만 원이 편성됨.

〈표 12. '16년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경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	산 출 내 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계	(×137,940) 275,880	(×46,295) 92,590	(×91,645) 183,290	198%		
민간대행사업비	(×137,940) 275,880	(×46,295) 92,590	(×91,645) 183,290	198%	-여성보호센터, 장애인편의시설 65,800  - 영보자애원: 종말처리장 여제분리막교체 183,290 추가	-여성보호센터, 장애인편의시설 65,800  -영보자애원, 생활인승합차 26,790

###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동 사업 예산은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비용의 보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비용의 보조)에 따른 국비보조 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분담·지원하여야 함.

- 동 사업의 추경 사유는 영보자애원의 종말처리장 여제분리막 교체를 위한 국비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 편성한 것인바,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과 연내 지급가능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사업에 대한 추경의 편성요건 및 그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파악됨.

◆ **연례적으로 당초 예산의 과소 편성 후 증액내시 하는 문제 개선 필요**

- 동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추가적 국비 증액 내시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4년 연속 연평균 9,800만원의 예산이 당초 예산 편성 후 증액 내시 됨.

- ‘기능보강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이미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연도의 예산액을 결정하는 계획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아닌 이상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증액 내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임.

- 그런데도 동 사업의 최근 몇 년간의 운영 사례로 볼 때 연말의

---

7) 기능보강비 신청 및 집행 절차: 각 시설에서 기능보강비안을 서울시에 제출 => 서울시는 복지부에 제출 => 복지부는 심사 후 예산액 결정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한 후 => 서울시 => 각 시설에 집행함

회계마감 시기를 앞두고 국비 내시를 증액해 왔고, 매년 반복적으로 증액 변경내시가 발생하는 사유의 상당부분은 당초의 국비 편성 단계에서 의도적인 과소 편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바, 서울시에서는 계획성 있는 기능보강비의 확보와 집행뿐만 아니라, 예산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 그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음.

#### ◆ **노숙인시설 기능보강비에 대한 중장기적 예산 계획 필요**

- 현재 시립 여성노숙인 시설인 영보자애원과 여성보호센터는 설립 된 지 각각 30년과 17년으로, 점점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이들 2개의 시설에 최근 4년간(2012~2015년) 집행된 기능보강사업비는 연평균 14억원에 이르고 있음.
- 향후 서울시에서는 기능보강사업에 된 효율적 예산운용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집행을 위하여 중장기적 기능보강 계획을 수립·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적기의 추경 미실시 및 예산 선집행 문제**

-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금번 영보자애원의 기능보강을 위한 국비가 추가내시 된 데는, “정원이 4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시설로 하수처리 장비 소모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 환경오염

및 정화장비 관련 대형민원 예방을 위해 종말처리장 여제 분리막 교체공사가 시급"하여, 서울시에서는 "국비 지원을 적극 요구한 결과"로 2016년 4. 18일자에 추가 국비를 확보하였으나, "추경 지원으로 시비매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16회계연도는 서울시 예산총칙의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국비 간주처리 제도가 없어졌음. 그러므로 국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추경안 심의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됨.
- 이점을 고려해 본다면,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밝히고 있듯이, 현장의 시급성과 애로사항이 큰 점을 감안하여 추경 시기를 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서울시는 2016회계연도 추경을 금번과 같이 연말을 기한 정리 추경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의 다급성이 해소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 한편, 서울시 예산 총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동 예산은 의회 추경 의결을 거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다급성을 이유로 추경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의결이 이루어지 전에 두 차례에 걸쳐 예산을 선집행 처리( `16.10.20일자 집행) 함.



-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조항에서 정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경우에만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넘어서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 조치로 판단됨.

## 5) 어린이집 지원(보조)

### ◆ 사업 및 추경 개요

- ‘어린이집 지원(보조)’ 사업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재원은 국·시·구비로 집행하는 국비보조사업 임(보조율: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sup>8)</sup>.
- ‘16년도 동 사업의 당초예산은 1,312억 9,962만 원이고, 금번 추경안은 107억 9,872만 원을 증액(8.2% 증가)한 1,420억 9,835만원이 편성됨.

〈표 10. ‘16년도 어린이집 지원(보조)사업 추경안 내역〉

(단위 : 천원, %)

8) 단, 누리과정 담임수당 지원 사업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00% 전입됨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	산 출 내 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계	(×19,064,823) 142,098,354	(×14,964,040) 131,299,626	(×4,100,783) 10,798,728	8.2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9,064,823) 142,098,354	(×14,964,040) 131,299,626	(×4,100,783) 10,798,728	8.2		
교재교구비	(×588,701) 1,550,246	(×850,342) 1,388,892	(×261,641) 688,988		평가인증시설 교재교구비: 1,550,246천원	평가인증시설 교 재교구비: 1,440,245천원
차량운영비	(×2,400) 6,320	(×2,057) 5,417	(×343) 903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 : 6,320천원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 : 5,417천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18,212,081) 47,958,480	(×14,373,282) 37,849,643	(×3,838,799) 10,108,837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단가 인상 월 20만원 교사겸직원장 월7.5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단가 월 17만원
누리과정 담입수당	91,894,320	91,894,320	-	-		

###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동 사업의 추경 사유는 세부사업 가운데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대한 국비 확정내시가 증액(41억 78만원)됨에 따라 이에 따른 증액분(총 107억 9,872만원, 이 가운데 시비분 66억 9,794만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구체적인 증액사유는, ①만 2세이하 담당교사를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단가가 당초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되었고, ②교사겸직원장에 대한 지원금이 당초 예산에 미포함 되었다가 확정내시에서 월 7.5만원이 편성된 것임.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sup>9)</sup>에

9)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따라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국:시:구비=30:49:21)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이의 예산 확보를 위한 금번 추경 사유는 적절함.

- 특히, 동 예산은 2016회계연도 내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인건비성 예산으로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또한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사업에 대한 추경의 요건 및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 적기 추경 미실시 및 예산 선집행 문제

- 하지만, 추경의 필요성과 별개로 동 예산은 앞서의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추경 전 집행의 시급성’을 이유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선집행 하였던바( `16. 10 .20) 이의 조치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 연례적으로 동일한 추경 사유 발생 문제 개선 필요

- 동 사업의 금번 추경 증액 사유인 상기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최근 5년간 동일한 이유로 추경을 통해 증액 편성한 사업 사례임.
- 구체적으로 아래 <표 11>를 살펴보면,
  - ‘0-2세 담당교사의 처우개선비’의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연도별로 각각 10만원, 12만원, 15만원,

17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각 동일연도마다 추경편성을 통하여 12만원, 15만원, 17만원, 20만원으로 그 단가가 각각 상향조정·확보 되었고,

- ‘교사겸직원장 지원금’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단 한번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매년 추경을 통해 그 예산이 편성·집행되어 왔음.

<표 11. 최근 5년간 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 추경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당 초 예 산		변 경 (추 경)		추경편성
	지원기준	가내시	지원기준	확정내시	
2012	0-4세 교사 5만원 -	(×3,667) 9,766	0-4세 교사 5만원 교사겸직원장 5만원	(×4,057) 10,816	660
2013	0-2세 교사 10만원 -	(×7,656) 20,509	0-2세 교사 12만원 교사겸직원장 7.5만원	(×9,486) 25,338	3,000
2014	0-2세 교사 12만원 -	(×9,205) 24,388	0-2세 교사 15만원 교사겸직원장 7.5만원	(×12,303) 32,597	5,110
2015	0-2세 교사 15만원 -	(×12,539) 33,019	0-2세 교사 17만원 교사겸직원장 7.5만원	(×15,039) 39,603	(×2,500) 6,584
2016	0-2세 교사 17만원 -	(×14,373) 37,850	0-2세 교사 20만원 교사겸직원장 7.5만원	(×18,212) 47,958	(×3,839) 10,108

○ 이처럼 동일 사유로 매년 정부 추가 내시가 뒤늦게 확정되어 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잦은 예산변경을 초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유발시키는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임.

- 따라서, 매년 이처럼 추경을 통해 증액·집행해야하는 꼭 필

요한 예산이라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애초 본예산에 편성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상과 같은 추경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에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6)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 ◆ 사업 및 추경 개요

- 동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교통비 및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시비 지원 사업임.
- '16년도 당초예산은 150억 6,365만원이고, 금번 추경안은 63억 원원을 감액(41% 감소)한 87억 6,365만원 임.

<표 13. '16년도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사업 추경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	산 출 내 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계	8,763,654	15,063,654	△6,300,000	41%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8,763,654	15,063,654	△6,300,000	41%	○ 교통비 6,000,000천원 - 17,361명 * 86,400원 * 4분기 ≍ 5,999,961천원 ○ 교육비 2,763,654천원 - 입학금 63,000천원 - 수업료 2,700,654천원 · 3,721명 * 1,450,800원 * 0.5 ≍ 2,699,213천원	○ 교통비 6,932,736천원 - 20,060명 * 86,400원 * 4분기 = 6,932,736천원 ○ 교육비 8,130,918천원 - 입학금 28,200천원 - 수업료 8,102,718천원 · 11,170명 * 1,450,800원 * 0.5 = 8,102,718천원

##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서울시에서는 추경 사유에 대하여,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대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흡수됨으로써 지원 대상 실인원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함.
- 동 사업은 크게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비’와 ‘교통비’ 지원을 위한 것인데, ‘교육비’의 경우 예산편성 당시 지원대상자를 연간 48,460명이라 추계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는 6,304명으로 감소되어 당초 예상 인원의 1/8 가량으로 줄었고, 이에 대한 예산으로는 당초 81억원에서 27억원으로 감액하려는 것임.
  - ‘교통비’의 경우, 당초 실 지원인원은 80,240명으로 추계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 30,769명으로 감소되었고, 이에 대한 예산은 당초 69억원에서 60억원으로 9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서울시에서는 상기의 감액안에 대하여 “ ‘16년도 6월말 기준 분기별 자치구 재배정을 통한 집행실적을 정산한 실집행 인원을 토대로 산출” 했다고 밝히고 있음.
- 동 사업의 추경 사유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감액 추경을 반영함으로써, 이의 예산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이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상위 관계법령 개정사항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전례답습적 예산 편성문제 개선 필요**

- 하지만, 금번에 추경사유가 발생한 근본적 사유와 추경 규모를 고려해본다면, 사실상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변경 사항을 매우 뒤늦게 반영한 사례인 동시에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으로 인한 감액 추경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임.
-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는 금번 추경 사유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의 변경에 따라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상당수 줄었다” 고 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 통합급여 방식에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변경<sup>10)</sup> 시행된 시기는 2015년 7월부터였음.
- 그러므로, 제도변경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변경 추계는 이미 2016년 예산 편성 시 반영 되었어야 할 것인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은 상위 관계법령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긴밀히 파악하지 못한 소극적 행정의 사례라 할 것이며,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의 전형적 사례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것임.
- 더욱이, 이의 예산을 “16년도 6월말 기준 분기별 자치구 재배정을 통하여 집행 실적을 정산” 을 해 본 후에야 비로소 감액을 결정하게 된 점 또한 뒤늦은 감이 있음.

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기존의 제도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각종의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통합급여 방식이었음. 그러나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편된 제도에서는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되고, 각 급여별 기준이 상이한 방식 즉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되었음. 개별 급여별 구체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생계급여: 중위소득 28%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임.

- 특히, 이 사업의 경우 예산규모(당초예산 기준)가 총 15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당초 예산대비 41%에 해당하는 63억 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이 같은 예산 추계 오류로 인하여 63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했다 할 것인바,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유의가 요구됨.

◆ **실수요 예측 강화 필요**

-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최근 5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불용액의 절대규모가 상당해 왔음. 이는 예산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수요 예측의 미흡으로 인한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는바, 향후 보다 과학적인 추계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그 개선이 필요해 보임.

<표 14. 최근 5년간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당 초 예 산	전 년 이 월	예 산 변 경	예 산 현 액	집 행 액	차 년 이 월	집 행 잔 액
2012	(x-) 7,528,551	(x-) 0	(x-) -705,901	(x-) 6,822,650	(x-) 6,623,849	(x-) 0	(x-) 198,801
2013	(x-) 17,883,528	(x-) 0	(x-) -709,000	(x-) 17,174,528	(x-) 16,436,215	(x-) 0	(x-) 738,313
2014	(x-) 17,382,528	(x-) 0	(x-) 0	(x-) 16,483,968	(x-) 16,209,258	(x-) 0	(x-) 274,710
2015	(x-) 16,570,248	(x-) 0	(x-) -754,165	(x-) 15,816,083	(x-) 14,410,370	(x-) 0	(x-) 1,405,713
2016	(x-) 15,063,654	(x-) 0	(x-) 0	(x-) 15,063,654	(x-) 5,968,249	(x-) 0	(x-) 9,095,405
2017 (안)	(x-) 9,000,000	-	-	-	-	-	-



## 7) 보육돌봄서비스

### ◆ 사업 및 추경 개요

- 동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 사업별 지원내역과 재원 부담율은 다음 <표 15>와 같음.

<표 15. 사업내용별 재원부담율>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재원부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30~100% 지원	국고보조사업 (국고 30%, 시비 49%, 구비 21%) ▶ 국고미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 시비 79%, 구비 21%
대체교사 지원	보육공백 발생하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파견(월1,714천원), 또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1일 5만원)	국고보조사업 (국고 20%, 시비 80%)
보조교사 지원	모든 어린이집	보조교사 : 월 78.4만원 지원 보육도우미 : 월63만원 지원	국고보조사업 (국고 20%, 시비 40%, 구비 40%)

- '16년도 당초예산은 1,922억 3,366만 원이고, 금번 추경안은 2,018억 1,432만 원으로, 95억 8,066만 원이 증가(5.0%)한 것임.

<표 16. '16년도 보육돌봄서비스 사업 추경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	산출내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계	(×62,843,922) 201,814,329	(×64,392,069) 192,233,665	(×△1,548,147) 9,580,664	5.0%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705,867) 5,931,811	(×705,867) 5,931,811	-	-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62,138,055) 195,882,518	(×63,686,202) 186,301,854	(×△1,548,147) 9,580,664	5.0%	○보육교직원인건비 : 167,918,882천원 ○ 보조교사 지원 : 127,963,636천원	○보육교직원인건비 : 158,338,218천원 ○ 보조교사 지원 : 127,963,636천원

##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앞서 제시하였듯이, 추경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①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 ② 예비비 사용·세출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극복이 곤란한 보충성 ③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 서울시는 동 사업에 대한 추경 사유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인건비의 경우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있고, 예비비 사용·세출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극복이 곤란하며,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실인원에게 연내에 집행 된다는 점에서, 금번의 추경은 그 요건 및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 당초예산 편성 시 국고내시에 맞는 시비편성 필요

- 서울시 예산서에 따르면, 동 사업의 당초예산은 국비가 643억 9,206만 원이 내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표 16). 그러나 실제 예산편성 당시 국비 내시액은 597억 원이었고, 서울시에서는 이 내시액을 그대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46억 원을 보태어, 643억 원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확인됨.
  - 즉, 서울시에서 자의적으로 국비 내시액 46억원을 더 편성해 놓은 것임. 따라서 금번 추경에서 국비는 당초예산의 실제 내시액보다 39억원이 늘어났음(597억원->636억원)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에는 15억 4,814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표기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이상의 사유에 대하여, “예산편성시 인건비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서울시 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보하고자 국고예산을 보건복지부의 국고내시액 (597억 원)대비 4,683백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 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2012년부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책사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공립 개소수(즉 예산)를 넘어선 것에 대하여는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인 것으로 이해 됨.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서울시가 취한 국비 편성액의 의도적 오류기입은 국고 미지원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지원 인건비를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보여지며, 그 취지에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
- 하지만, 국비 내시액은 정부에서 내시된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예산운용의 당연한 질서라 할 것인바, 국비 내시액을 실제 내시액과 다르게 과다 기입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예산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만약 정부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 예산운용의 규정 안에서 다양한 대안을 찾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 한 것으로 보여 짐.

**◆ 국비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비 확보 노력 필요**

- 서울시는 2012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책사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연평균(12년~16년) 1,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규모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결과로, 지난 2011년 당시 658개소에 머무르던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6년 10월 현재 1,030개로, 동 기간동안 372개소가 증가됨.
- 하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 대상 시설로 지정 받지 못한

시설수는 2012년 당시 15개소(전체 국공립어린이집의 2.2%)였던 것이, 2016년 10월 현재 233개소로 증가하여,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수 대비 22.6%에 이르고 있고, 연도별 미등록비율은 점차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

<표 17. 연도별 정부등록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내역>

(단위 : 천원, %)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국공립 수		658	690	750	844	922	1,030
복지부 등록	등록국공립 수	647	675	737	833	759	797
	등록비율	98.3	97.8	98.3	98.7	82.3	77.4
	미등록 수	11	15	13	11	163	233
	미등록비율	1.7	2.2	1.7	1.3	17.7	22.6

· 자료출처: 2016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 이에 서울시에서는 국고미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비(79%)와 구비(21%)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국고미지원 시설 233개소에 대한 연간 1 시비 지원금은 70억 원에 이르고 있음.
- 서울시는 2018년까지 총 1,934개소(국공립 비율이 30%를 차지하게 되는 개소수)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국고미지원 시설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시비지원 부담금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향후 서울시에서는 국비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비 확보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